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7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클린성주 친환경농촌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클린성주 친환경농촌만들기 추진 협의체에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내용 명시(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
나. 예산조치 : 20,000천원 정도
다. 입법예고 : 2015. 5. 28. ~ 6. 16.(의견없음)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마. 규제심사 : 해당사항없음
바.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 6. 12)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 중 “조직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직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깨끗하고 쾌적한 들녘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 등 클린성주만들기를 위한 활동
2. 클린성주사업홍보 및 군민의식 개혁과 전국 확산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에 필요한 지원
3. 들녘환경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
4. 환경오염행위 계도 및 지도 등 환경지도자 책무에 필요한 사업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행・재정적 지원) 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의체 구축과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9조(행・재정적 지원) ----------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직----------.
<신 설>	1. 깨끗하고 쾌적한 들녘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 등 클린성주만들기를 위한 활동
<신 설>	2. 클린성주사업홍보 및 군민의식 개혁과 전국 확산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에 필요한 지원
<신 설>	3. 들녘환경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
<신 설>	4. 환경오염행위 계도 및 지도 등 환경지도자 책무에 필요한 사업